성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4년 4월 일
발 의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및 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조례 마련이 국무조정실에서 관리중인 “손톱 밑 가시 뽑기” 과제로 확정됨

○ 이에 따라 성주군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관련조례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숙박업을 제외하여 사용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성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의 【별표1】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숙박업소를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485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2) 입법예고 : 의견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별첨)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단위 : 만원)

현 행

〔별표1〕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후)	
⋮				
2.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가. 객실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나.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5
다.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10	30	50	3
⋮				

개 정 안

〔별표1〕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과 태 료				포 상 금액
부 과 대 상	1 차 위 반	2 차 위반	3차위반(이후)	
⋮				
2. 목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가.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나.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5
다. **삭제**				
⋮				

[별표 1]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과 태 료				포상 금액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1.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나.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5
다.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라.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	10	30	2
2. 목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가.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나.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5

과 태 료				포상 금액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50	100	200	10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5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	10	30	2
8.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50	100	200	10